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문신사법안 및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검 토 보 고

《 문신사등 제도화 및 준수 의무 등 》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112호)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872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경 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8
1. 총괄적 검토	8
2. 주요 조문별 검토	17
가. 제명 등	17
나. 목적	19
다. 정의	21
라. 문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등	25
마. 문신사의 자격 등	29
바. 문신업소의 개설등록 또는 신고 등	39
사. 문신사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	43
아. 시정명령 및 문신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49
자. 영업자단체 설립	54
차. 벌칙	56
카. 기존영업자 인정 문제	63

I. 개 요

1. 문신사법안(의안번호 제511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주민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10. 31.
- (3) 회 부 일 : 2024. 11. 1.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문신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문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문신사 업무를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바)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

사)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문신업소 개설자가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행정처분이 확정된 문신업소 개설자에 처분 내용, 해당 문신업

소의 명칭 및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

차) 문신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2.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의안번호 제587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6.

(3) 회 부 일 : 2024. 11. 27.

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1992년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하지만 2022년 8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2023년 12월 부산지법(박주영 판사)에서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와 다르고 시술 방식과 염료의 위험 감소, 사회 인식 변화, 대법원 판례 변천 등을 종합하면 눈썹 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특히,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었던 일본도 지난 2020년 우리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함. 이제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이러한 흐름 속에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규제혁신을 위해 도

입한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혁신과제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기술 허용’을 선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부터 시작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 연구를 통해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음.

그리고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기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기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문신 기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 기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하였고, 그 이유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남.

또한,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함. 사실상 문신과 반영구화장 기술은 비의료인의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정서에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문신업소 및 반영구화장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II.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2건의 제정안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이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문신행위 등에 대하여 그 자격, 업무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박주민 의원안은 ‘문신사법안’을 제명으로 하면서 문신사라는 단일 자격 부여 및 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반면, 윤상현의원안은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제명으로 하면서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로 자격을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데 큰 차이가 있음.

< 양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비교 >

장 구성	조문	박주민의원안	장 구성	조문	윤상현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문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제2장 문신사 자격 등	제4조	문신사의 자격	제2장 문신사 및 반영구 화장사 의 면허 등	제3조	문신사의 면허 등
	제5조	자격시험		제4조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등
	제6조	등록		제5조	면허의 등록
	제7조	등록거부		제6조	결격사유
	제8조	등록취소 등		제7조	문신사등의 업무범위와 한계 등
	제9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	무면허자의 문신행위 등 금지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	문신업소등의 개설신고 등
				제10조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장 구성	조문	박주민의원안	장 구성	조문	윤상현의원안
				제1조	문신업자등의 위생관리의무 등
				제2조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등
제3장 문신업소	제1조	문신업소의 개설등록	제3장 지도·감독 등	제3조	보고 및 출입·검사
	제2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4조	면허취소 등
	제3조	문신업소 개설자의 지위 승계		제5조	영업의 제한
	제4조	폐업 등의 신고		제6조	시정명령
제4장 문신사의 의무 등	제15조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제4장 보칙	제17조	문신업소등의 폐쇄 등
	제16조	위생 안전관리 의무		제18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17조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		제19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18조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 금지		제20조	청문
제5장 행정처분 등	제19조	보고 및 출입·검사	제5장 벌칙	제21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20조	시정명령		제2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1조	개설등록의 취소 등		제23조	영업자 단체
	제22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24조	벌칙
제6장 보칙	제23조	청문	제5장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4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26조	과태료
	제25조	위임 및 위탁			
	제26조	문신사협회			
제7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7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제28조	양벌규정
	제29조	과태료		제29조	과태료
부칙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문신사등의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 문신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이 할 수 없다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의료법」에는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이 ‘의료행위¹⁾’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27조에서 비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 중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접골사·침사·구사), 안마사에 한하여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고 있음.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u>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u> (단서 생략)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1조(의료유사업자)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제82조(안마사)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의료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정의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이러한 문신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보건범
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음.

<문신 시술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①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 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가 아 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과연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여 영구적인 문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그 시술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려 보지 않았고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 용 침으로 인하여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의료법 제25 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판결).
②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 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 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 생 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도5964 판결).
③ ‘의료행위의 내용은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 는 것이어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 어 의료행위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도5531 판결).

□ 헌법재판소 또한 비의료인에 대하여 문신 기술을 포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의료법 제27조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의료인 면허 없이 문신 기술을 하려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등 결정).

□ 한편, 우리나라는 기술자 35만 명(문신 5만 명, 반영구화장 30만 명), 이용자 1,300만명 이상으로 추정²⁾될 만큼, 문신(반영구화장 포함)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수용성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보건복지부의 ‘문신 기술 이용자 현황조사’(2023. 11.)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 1,685명(남성 285명, 여성 1,400명) 중 문신이용자는 500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1,444명,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이용자는 259명에 이르며, 비의료인에 대한 허용여부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수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문신 기술 이용자 현황조사 결과('23. 11. 기준)>

항목	문신(N=500)	반영구화장(N=1,444)
일반 특성	(성별) 남성 33.6%(168명), 여성 66.4%(332명) (연령) 30대 37.8%(189명) > 20대 35.6%(178명) > 40대 17.6%(88명) > 50대 이상 9%(45명)	(성별) 남성 11.1%(160명), 여성 88.9%(1,284명) (연령) 30대 37.6%(543명) > 40대 26.5%(382명) > 20대 19%(275명) > 50대 이상 16.9%(244명)
기술 장소 (복수응답)	전문샵 81.0%(405명) 원룸·오피스텔 13.8%(69명) 미용업소 13.6%(68명) 출장 기술 2.4%(12명) 문신 학원 2.0%(10명) 병·의원* 1.4%(7명) 기타 0.8%(4명) * 병·의원 기술자 : 비의료인력 42.9%(3명) > 의사 외 의료인력 28.6%(2명) > 의사 14.3%(1명) > 잘 모르겠음 14.3%(1명)	미용업소 52.6%(759명) 전문샵 25.7%(371명) 원룸·오피스텔 22.2%(320명) 출장 기술 8.8%(127명) 병·의원* 6.8%(98명) 문신 학원 3.2%(46명) 기타 0.6%(9명) * 병·의원 기술자 : 비의료인력 33.7%(33명) > 의사 23.5%(23명) > 의사 외 의료인력 22.4%(22명) > 잘 모르겠음 20.4%(20명)

2) 한국경제, 「1,300만명이 문신·타투...기술자는 여전히 범법자」, 2019. 6. 15.

항목	문신(N=500)	반영구화장(N=1,444)
시술 적정 업소	전문샵 81.6%(408명) 병·의원 14.6%(73명) 미용시설 3%(15명) 원룸·오피스텔 0.8%(4명)	병·의원 37.5%(542명) 전문샵 33.8%(488명) 미용시설 26.9%(389명) 원룸·오피스텔 1.4%(20명) 기타 0.3%(5명)
비의료인 허용	비의료인 허용 54.2%(271명) > 의료인만 허용 36.3%(183명) > 의견없음 9.2%(46명)	비의료인 허용 51%(737명) > 의료인만 허용 38.1%(550명) > 의견없음 10.9%(157명)
비의료인 허용 사유	[N = 271명] 대부분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화를 통한 안전한 시술 필요 52.4%(142명) > 의사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안전한 시술 가능 24.0%(65명) > 시술 병원 부재 및 전문 시술자에게 받고 싶음 22.1%(60명) > 기타 1.5%(4명)	[N = 737명] 대부분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화를 통한 안전한 시술 필요 52.6%(388명) > 의사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안전한 시술 가능 23.3%(172명) > 시술 병원 부재 및 전문 시술자에게 받고 싶음 23.2%(171명) > 기타 0.8%(6명)

□ 참고로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문신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도 함.

< 해외 주요국 문신 제도 현황 >

국가	의료행위	문신 제도	
		문신시술자 면허·자격	업소등록·신고
미국		Alabama 등 12개주 (Alabama, Alaska, Arkansas, California, Florida, Georgia, Hawaii, Iowa, Kansas, Kentucky, New York, Oklahoma)	California 등 8개주 (California, Delaware, Idaho, Illinois, Indiana, Kentucky, Louisiana, New York)
캐나다			온타리오주
프랑스			○
영국		○	○ ※ 런던: 영업장소만 면허(시술자 면허x)
독일			○*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뉴사우스 웨일즈
태국		○	
일본	반영구화장(미용문신) ※ 예술문신은 의료행위아님		

* 독일: 타투 시술자는 해당 직업 수행을 당국에 통보(상업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준수)

※ 출처: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방안 마련」(한국능률협회, '24)

□ 하지만 상기한 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문신 등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인 상황이고, 문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신 등 시술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되거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이용자는 문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임.

□ 제정안과 같이 문신 등에 대한 독립된 관리 체계를 제정함으로써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에서 시술되고 있는 사회 현실과 법 제도의 간격을 해소할 필요성과 함께,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음³⁾.

□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에서도 2022. 2. 17. 국회의장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하여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데 반해 여전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현행법의 태도는 문신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개성 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문신 시술에 관한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하는 조속한 입법 논의와 검토’를 촉구한 바 있고,

하급심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

3) 국회 입법조사처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2021. 10. 6. 「외국 입법·정책 분석」 제9호)에서도 문신등 시술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를 위한 행위'라는 본래의 의미도 고려하여야 함을 이유로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⁴⁾가 있음.

□ 다만, 2건의 제정안을 보면 업종 세분화(문신사 vs 문신사·반영구화장사), 자격 요건 등 주요 사항에 있어 차이가 있고, 그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존 영업자 자격 취득 유예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바, 이러한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면서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미용·개성 표현을 위한 문신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자와 시술자의 보건·위생상 안전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과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단체 간 이견 존재 및 의료계의 부작용 우려로 문신 시술자의 자격 및 시설·위생관리 기준 등 국가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제도화 추진이 필요한바, 문신 제도화를 위해 위생 및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문신사 양성을 위한 국가시험 시행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정안 부칙의 시행일(공포 후 1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4) 청주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2020고정825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20. 선고 2022고정569 판결. 특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20. 선고 2022고정569 판결에서는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무조건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피시술자의 이익과 의사도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화가 오히려 불법과 위협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구분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미용·개성 표현을 위한 문신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자와 시술자의 보건·위생상 안전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과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단체 간 이견 존재 및 의료계의 부작용 우려로 문신 시술자의 자격 및 시설·위생관리 기준 등 국가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제도화 추진 필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제16조(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개정안에서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며 질병 치료 효과 및 부작용 등과 관련이 높은 물품인 만큼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취급을 위한 별도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자가 모든 일반의약품을 타인에게 사용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 검토 필요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	• 제2조(정의) 제1호: '색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문신용염료'로 명확히 규정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제16조(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제4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 내용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배출 시 전용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이 아닌 문신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통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10개 기관 의견포함],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모발이식학회)	• 문신 제도화 반대: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 - (법안) 허위·과대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 규정 필요
관련 단체 ⁵⁾ (타투유니온, 코리아 아트메이크업협회,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사회)	• 문신사법 제정 찬성: 직업 지향 차이(서화문신은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예술인 인정)로 서화문신과 미용문신 분리 필요 • 문신사법 제정 찬성: 문신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자격시험 응시 조건 추가, 업소등록 전 위생교육 이수, 일회용 바늘만 사용, 불법 의료행위 규제 등 필요 • 문신사법 제정 반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①의료 분야까지 업무에 포함하려는 경향이 일어나 의료계와 갈등 증폭, ②미용 영세업자의 비용 증가와 수입 감소로 영역 갈등, ③수많은 업종이 독립적 입법화가 된다면 행정력 낭비

5) 이는 주로 박주민의원안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임.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등

- 박주민의원안은 제명을 ‘문신사법안’으로, 윤상현의원안은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으로 하고 있음.
- 문신은 피부에 바늘을 찔러 문신용 염료⁶⁾를 주입하여 글씨 또는 그림을 새기는 것으로, 목적·지속기간·시술 깊이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문신(서화문신), 반영구화장, 두피 문신(SMP)로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음.

<문신 vs 반영구화장>

구분	문신(서화문신, 일명 ‘타투’)	반영구화장	두피 문신(SMP)*
시술 범위	신체 대부분 부위	눈썹, 아이라인, 입술, 튜샬, 헤어라인, 백반증·흉터 부위	두피
시술 목적	개성표현, 패션, 신념 등	미용목적 (화장, 튜샬, 백반증 커버 등)	탈모 커버, 머리숱 보강, 패션, 개성표현
시술 깊이	진피층 밑 1~2mm * 유두층과 망상층 사이	표피층 하부와 진피 상부층 사이	표피와 진피의 경계
유지 기간	거의 영구적	6개월~5년 이상 지속	5~10년 정도 유지
시술 장소	전문 타투샵	미용실, 반영구화장샵, 병·의원	두피문신 전문샵, 병·의원 등
시술 모습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탈모 등에 대한 대안으로 두피에 머리카락과 비슷해 보이도록 작은 점이나 선 모양을 그려 넣는 두피 문신(SMP)도 하나의 영역으로 부각

6)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유해물질 노출 우려 및 부작용 등 그 위해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보건위해상 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 6. 13. 개정, ’25. 6. 14. 시행)으로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여 식약처 소관으로 이관됨.

- 이처럼 세부적으로 서화문신, 반영구화장, 두피문신이 구분되기는 하나,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피부의 침습이라는 기본 원리 및 사용하는 색소(문신용 염료)가 같아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현장에서도 서화문신과 반영구화장이 복합적으로 시술되는 사례가 많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규율은 ‘문신업’ 단일 업종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음.
- 한편, 전문성이나 세부 업종 간 갈등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를 구분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문신업’ 단일 업종으로 할 지, ‘문신업’과 ‘반영구화장업’으로 구분하여 규율할 지 논의는 필요해 보임.
- 그 외,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의료 분야까지 업무에 포함하려는 경향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시술 목적, 시술 부위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침습행위이며, 사용하는 기기와 염료에 큰 차이가 없고 행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반면 구분의 실익은 크지 않은바, ‘문신사’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나. 목적

- 박주민의원안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행복추구에 기여할 것”을, 윤상현의원안은 문신사·반영구화장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반영구화장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반영구화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각각의 안 제1조).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행복추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문신사·반영구화장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반영구화장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반영구화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안의 목적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박주민의원안은 문신사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관계로 문신사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윤상현의원안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에 대해 규율하는 관계로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제정안의 규율범위를 문신사에 한정할지 여부 등에 따라 목적 규정도 수정되어야 하겠음.

- 그 외, 문신행위 등을 양성화하려는 제정안의 주요 취지는 예술적 목적의 문신을 통한 국민의 행복추구에 기여하는 목적과 함께 문신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의무 규율로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으므로, 2건의 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야겠음.

다. 정의

- 박주민의원안에서는 문신행위, 문신사, 문신업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윤상현의원안에서는 문신사, 반영구화장사, 문신행위, 반영구화장행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음(각각의 안 제2조).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신행위”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글씨, 그림, 무늬 등을 새겨 넣는 행위를 말한다. 2. “문신사”란 제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문신업소”란 문신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신행위”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머리피부를 포함한다)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반영구화장행위”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 넣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문신사”란 제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반영구화장사”란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글씨, 그림, 무늬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윤상현의원안은 문신행위와 구별하여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을 새겨 넣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반영구화장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체에 미치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정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구체적으로 문신행위 등을 위해서는 ① 의료기기인 ‘문신기 및 바늘’, ② 문신용 염료, ③ 의약품 등이 필요한데,

‘문신기 및 바늘’은 의료기기로서 「의료기기법」 제3조⁷⁾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등급을 분류⁸⁾한 의료기기의 등급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⁹⁾,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어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관리되고 있었으나, 2023. 6. 13.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025. 6. 14. 시행)으로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생용품’¹⁰⁾으로 이관된 상황으로, 2024. 8. 6.

7) 「의료기기법」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9) (재사용가능 천자침, 1등급) 피부나 조직에 가는 침을 삽입하여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멸균 침으로, 사용 전에 멸균 필요

(일회용 천자침, 2등급) 피부나 조직에 가는 침을 삽입하여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멸균된 일회용 제품(채혈, 약물 주입용)

10) 법률 제19474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3. 6. 13. 개정, 2025. 6. 14. 시행)

1.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 6. 14. 시행)에 따라 문신용 염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바늘 등’은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바늘 등이어야 하고,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 또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문신용 염료일 것 등 보다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들의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 부분을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문신용 염료’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박주민의원안에서는 ‘문신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화문신은 색소를 진피까지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행균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균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ナイ프·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입하고 거의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반면, 반영구화장은 색소를 표피와 진피 사이에 주입하며 유지기간이 6개월에서 5년 정도에 이르는 등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점이 있고, 서화문신은 주로 예술적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은 주로 미용적 목적으로 시술됨에 따라 종사자의 인력군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상현의원안과 같이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 아울러, 박주민의원안에서는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글씨, 그림, 무늬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논의 결과에 따라 ‘문신업’ 단일 업종으로 하여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문신행위’의 개념에 반영구화장행위의 개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도 있겠음.

라. 문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등

- 박주민의원안은 문신사의 「의료법」에 대한 특례 및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고(안 제3조),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안 제17조) 및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 금지(안 제18조)는 별도의 조문에서 규율하고 있는 반면, 윤상현의원안은 ‘문신사등의 업무범위와 한계 등(안 제7조)’에서 「의료법」에 대한 특례 및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대통령령에의 위임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문에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의 문신행위등 금지,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등 금지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제3조(문신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①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문신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신사등의 업무범위와 한계 등) ① 문신사 또는 반영구화장사(이하 “문신사등”이라 한다)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또는 반영구화장행위(이하 “문신행위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7조(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금지) 문신사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신사등은 제9조에 따라 개설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 금지) 문신사는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신사등은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신사등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들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¹¹⁾에 대한 특례를 두어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관련 입법례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등에 서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라도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①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각 호 생략)

□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문신행위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판시하고 있지만, 문신은 의료의 본래적 의미인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를 위한 행위’가 아니며,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¹²⁾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판단으로 일정한 영역에서 「의료법」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박주민의원안 ‘제4장 문신사의 의무 등’에 편재되어 안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금지’, 안 제18조의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 금지’의 내용은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관련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윤상현의원안과 같이 ‘문신사등의 업무범위와 한계’ 부분에서 함께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미성년자의 경우 보건위생상의 안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경우 ①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는 주, ②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주, ③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시술 시에 참관하는 주 등으로 나뉘고, 영국은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법」(Tattooing of Minors Act[1969])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시술을 금지하고 있음¹³⁾.

12) 특히 청주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0고정825 판결에서는 ‘침습’은 가능한 여러 형태만큼이나 다양한 수준의 위험이 뒤따르고, 극히 일부나마 비의료인이 습득하고 시행할 수 있는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 예방과 대처가 가능한 영역(채혈 혈당측정기, 사혈침, 귀고리 등 장신구를 착용하고자 귓볼을 뚫는 행위)이 있고, 피시술자의 시각에서 스스로 신체를 통한 개성 표현의 자유와 건강권을 형량하여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료행위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가 질병의 진찰과 치료 방법에 상당한 재량을 갖는 것과 구분된다고 판시함.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2019, pp.159~174.

□ 그 외, 문신사등이 아니면 문신행위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윤상현의원안 제8조제1항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방사선 치료 시 치료부위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 다음에 실시하는 문신 등 현재 의료현장에서 의료 목적의 문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윤상현의원안과 같은 내용을 규율할 경우 본래적 침습행위를 수행하는 의사에 의한 문신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입장임.

마. 문신사의 자격 등

□ 박주민의원안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문신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문신사의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자격자가 문신사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등록 거부(안 제7조) 및 등록 취소(안 제8조) 등으로 관리하는 반면,

윤상현의원안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학력 인정 기관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 면허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부여하여 등록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격을 인정(안 제3조부터 제5조)하고, 결격사유(안 제6조) 및 면허 취소(안 제14조) 등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제4조(문신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문신사의 자격을 갖는다. 1. 제5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3조(문신사의 면허 등)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신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
제5조(자격시험) ① 문신사 자격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④ 문신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 ① 문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문신사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신사에게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한 절차·방법과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거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제4조(반영구화장사의 면허 등) 반영구 화장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 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영구화장 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반영 구화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받은 사람 제5조(면허의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3조에 따른 문신사 면허 또는 제4조에 따른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 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대장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사 또는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문신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중독자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5. 이 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8조(등록취소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문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문신사 또는 반영구화장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5.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6. 미성년자 7. 이 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14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신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문신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신사가 등록증 대여 등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6.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신업소를 개설·운영한 경우 7. 제17조를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경우 8. 제18조를 위반하여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한 경우 9. 문신업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문신사의 업무를 한 경우 10.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1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문신사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등을 한 경우 3. 제7조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등을 한 경우 4.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등의 면허를 받은 경우 8. 문신업자등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문신행위등을 한 경우 9. 면허자격정지 기간에 문신행위등을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0. 문신사등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③ 제1항의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문신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문신사가 아닌 자는 문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무면허자의 문신행위 등 금지 등) ① 문신사등이 아니면 문신행위 등을 하지 못한다. ② 문신사등이 아니면 문신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첫째, 자격 취득 통로와 관련하여, 박주민의원안은 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나, 윤상현의원안은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박주민의원안보다 그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문신행위가 국민의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박주민의원안과 같이 자격시험제도도 도입할 필요성은 큰 것으로 보이는바, 자격 취득 통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그 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신설은 고용노동부 소관 문제로 사전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겠음¹⁴⁾.

□ 둘째, 박주민의원안은 문신사 자격 부여에 대하여 ‘등록’으로, 윤상현의원안은 ‘면허’로 규정하고 있음.

- 자격제도는 특정 업무의 수행, 영업활동, 그 밖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기능의 보유 또는 일정한 경험의 있음을 공증하는 제도로써, 자격 부여의 형식은 자격자가 행하는 업무의 성격, 사회에 미칠 영향, 공익 보호의 필요성 및 자격자 결정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대표적인 자격 부여 형식은 행정법적으로 ‘허가’¹⁵⁾의 성격을 가진 자격‘면허’ 및 법률관계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공증의 성질을 가진 자격‘등록’으로 구분됨¹⁶⁾.

□ 박주민의원안의 경우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임을 확인하면

1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설 또는 기관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평생교육법」 제2항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① 지정 교육·훈련기관은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단위과정별로 내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별표 4의3에 따라 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한다.

15)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부작위의무)를 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함.

16)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p.569~574.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 없이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신업자들을 조속히 제도권 내로 용이하게 편입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분야 관련 입법례에서는 면허 제도로써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또한 문신 기술의 비가역성과 부작용 측면에서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자의 기술은 이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신사 자격도 ‘면허’로 규율하고, ‘등록거부’는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면허제를 통한 자격부여 >

직종(28개)	면허·자격 관련 법령(10개)	면허·자격 제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	○ (면허 발급) 보건복지부 ○ (결격사유) 법 제8조
조산사	「의료법」 제6조(조산사 면허)	
간호사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 (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
안마사	「의료법」 제82조(안마사)	○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
약사	「약사법」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 (면허교부) 보건복지부 ○ (결격사유) 법 제5조
한약사	「약사법」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	○ (면허발급) 보건복지부 ○ (결격사유) 법 제5조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영양사의 면허)	○ (면허발급) 보건복지부 ○ (결격사유) 법 제16조
이용사·미용사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면허발급) 시·군·구 ○ (결격사유) 법 제6조

직종(28개)	면허·자격 관련 법령(10개)	면허·자격 제도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 (면허발급) 보건복지부 ○ (결격사유) 법 제6조의2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	○ (자격증 교부) 보건복지부 ○ (결격사유) 법 제37조
의자·보조기 기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자·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 (자격증 교부)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보건교육자격증의 교부 등)	○ (자격증 교부) 보건복지부 ○ (결격사유) 법 제12조의2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결격사유) 법 제39조의13
보조공학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 (자격증 교부) 보건복지부 ○ (결격사유) 법 제16조

□ 아울러, 박주민의원안은 「공인노무사법」 입법례¹⁷⁾ 등을 참조하여 ‘등록거부’로써 결격사유와 유사한 입법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17)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외, 구체적 등록 거부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박주민의원안 제7조제4호의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윤상현 의원안과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제2조제13호)인 ‘감염병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고,

둘째, 박주민의원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취소 사유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¹⁸⁾와 같이,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신업소를 개설·운영한 경우’(제6호)와 같이 절차 위반적 성격을 가진 사유와, 등록증 양도·대여(제4호),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제6호)와 같이 제도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성격을 가진 사유가 혼재되어 있으나, 「약사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면허·자격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 등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실체적 사유를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약사법」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5조(결격사유)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피성년후견인)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 등 중독자)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6. 이종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18)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문신업소의 개설등록 또는 신고 등

- 박주민의원안은 문신사로 하여금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하게 하면서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업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결격사유와 함께, 문신업소 개설자의 지위 승계 및 폐업신고를 규정하고 있고(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윤상현의원안도 문신사 또는 반영구화장사로 하여금 문신업소 또는 반영구화장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9조 및 제12조).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제11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 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 문신업소를 개설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문신업소 개설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신업소등의 개설신고 등) 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는 영업소(이하 “문신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반영구화장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행위를 하는 영업소(이하 “반영구화장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③ 문신업소 또는 반영구화장업소(이하 “문신업소등”이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문신업소등의 시설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제12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업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문신사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장비 기준, 신고의 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증명서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신업소 개설자의 지위 승계) ① 문신업소 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문신업소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문신사가 아니거나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 문신업소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4조(폐업 등의 신고) 문신업소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	제12조(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등) ① 문신업자등이 문신업소등을 폐업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첫째, 박주민의원안은 문신업소 개설을 등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윤상현의원안은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 둔 장부에 등재함으로써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신고’는 사인(私人)이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¹⁹⁾.

-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상 공중위생영업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로 관리할 필요도 있겠으나, 문신사 제도는 국민의 보건위생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신규 제도인 만큼 신고보다는 강화된 등록 제도를 통해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음.

19)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333 및 p.338.

- 둘째, 문신업소 개설등록 혹은 신고를 하는 경우 타 입법례의 경우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설 및 장비 등 등록을 할 때 어떤 사항을 갖추게 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러한 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제정안에서도 개설등록 또는 신고 시 이러한 사항을 규율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u>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u>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u>등록</u>하여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u>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u>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u>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u>를 하여야 한다. ③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u>
--

사. 문신사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등

-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문신사등으로 하여금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문신사등에게 국민건강상의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위생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박주민의원안 제15조 및 제16조, 윤상현의원안 제10조 및 제11조).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제15조(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① 문신사는 문신행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등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① 문신업자 또는 반영구화장업자(이하 “문신업자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문신행위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문신사 및 문신업소 개설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 멸균을 한 기구, 소독이나 멸균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서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독 및 멸균의 기준·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문신에 사용하는 바늘은 1명에 한 정하여 사용할 것 3.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일	제11조(문신업자등의 위생관리의무 등) ① 문신업자등은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기구(반영구화장기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한 기구와 멸균을 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2.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 바늘은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문신업소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반의약품만을 사용할 것 4.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서 배출할 것 5. 손님에게 문신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정보와 부작용의 위험, 문신 후 관리와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할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신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있는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할 것 4. 문신업소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서 배출할 것 5. 「약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만을 사용할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신업소등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신업자등은 문신업소등의 이용자에게 문신행위등에 사용한 재료에 대한 정보와 부작용의 위험, 사후관리와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③ 문신업자등은 면허증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먼저,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과 관련된 사항임.
- 2건의 제정안 모두 문신사 등으로 하여금 매년 문신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박주민의원안(제15조제2항)에서는 위생교육등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 실시 시기에 대해서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음.
- 다음,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
- 첫째, 대체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윤상현의원안에서는 문신업소 등에서 배출한 폐기물 등 인체 감염 위해 우려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이는 만큼 통합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겠음.
- 둘째, 제정안 모두 시술 바늘의 위생 관리에 대해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박주민의원안은 ‘문신에 사용하는 바늘은 1명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윤상현의원안은 ‘문신 또는 반영구화장 바늘은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박주민의원안의 경우 1명에 대해서 바늘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한 위생관리적 측면에서 윤상현의원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셋째,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사법」 제2조제9호20)에 따른 일반의약품만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의사의 처방 없

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한편,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²¹⁾되는바, 리도카인(Lidocaine), 프릴로카인(Prilocaine) 등 국소마취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문신업소(특히 반영구화장)에서 시술 시 통증 감소를 위하여 처방전 없이 사실상 유통되고 있는 실정²²⁾이며, 통증이나 감각을 저하하는 효과가 있는 일반의약품이 효능·효과와 맞지 않은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음.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²³⁾는 「약사법」 제44조제1항, 제44조의2²⁴⁾에 따라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20)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21) 「약사법」 제2조(정의)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판매 가능하고,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함.

22) 테일리팜, 「수출용 리도카인, 문신시술소 마취제로 둔갑」, 2023. 3. 28.

23)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별도로 제출한 의견임.

24)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이하 생략)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약사법」 제50조제1항25)에 따라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공산품과 달리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질병 치료 효과 및 부작용과 관련이 높은 물품인 만큼, 「약사법」상 의약품 취급을 위한 별도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자가 모든 일반의약품을 타인에게 사용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넷째,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한 부분에 관련된 것임.

□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로서 세부적으로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²⁶⁾로 나뉘는데, 의

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5)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작·장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그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타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통하여 배출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하여 환경부 등과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보임.

아. 시정명령 및 문신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 박주민의원안은 문신업소 개설자가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문신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문신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등에 문신업소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안 제20조 및 제21조),

윤상현의원안은 보다 포괄적으로 시정명령 사유를 규정(위생관리 의무 위반 외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미이수, 시설 및 장비 미구비, 이용자에게 정보에 대한 설명 불이행, 면허증 등 게시의무 위반)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등을 영업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소 개설자가 제16조 각 호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제21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소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문신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문신행위를 하게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문신업소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문신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신행위 등에 사용한 재료에 대한 정보와 부작용의 위험, 사후관리와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3항에 따른 면허증 및 신고증명서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7조(문신업소등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등이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3. 문신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4. 문신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문신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한 이후 해당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문신업자등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해당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박주민의원안은 시정명령의 대상을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인 경우에만 부과하고 있는바, 윤상현의원안과 같이 문신업소 개설자가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록증 게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한편, 박주민의원안에서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4가지 사항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윤상현의원안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아울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등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러한 제정안은 관련 입법례로 「공중위생관리법」 체계와는 다소 상이한데,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문신업소 개설자가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영업장부나 서류 열람을 거부·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정안(박주민의원안 제29조제2항제3호, 윤상현의원안 제26조제1항제5호)에서와 같이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 사유로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겠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등 관련 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 ⑥ (생략)

자. 영업자 단체 설립

- 2건의 제정안은 문신사등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박주민의원안 제26조) 또는 ‘스킨아트중앙회’(윤상현의원안 제23조)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제26조(문신사협회) ① 문신사는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문신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문신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영업자 단체) ① 문신사등은 문신사등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스킨아트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6월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하여 파악한 관련 단체 현황을 보면 대한문신사중앙회,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한국패션타투협회, 대한미용사회 등 17개 단체로 파악된바, 권익 증진 등을 위해서는 제정안과 같이 단일의 영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문신·반영구화장 단체 현황 >

연번	단체명 (법인 허가 주무관청)	소재지
1	(사)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진구 중앙대로 691번가길 23-1
2	(사)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50-1, 5층
3	그린타투센터 (임의단체)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49길 53

연번	단체명 (법인 허가 주무관청)	소재지
4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11, B1층
5	(사)뷰티산업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18, 3층
6	(사)케이뷰티인협회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25, 3층
7	(사)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69 유강빌 딩 3층 302호
8	(사)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95, 605호
9	타투유니온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4, 7층
10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3-4, 3층
11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임의단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18, 3층
12	한국반영구화장학회 (임의단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40 2층
13	(사)한국패션타투협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11, B1층
14	(사)대한미용사회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23
15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60 서강빌 딩 5층
16	(사)대한네일미용사회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9 범우빌 딩 301호
17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0길 13 명진빌딩 201호

차. 벌칙

- 2건의 제정안은 법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바,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고, 과태료는 공통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 박주민의원안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문신사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벌칙 면에서 박주민의원안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27조제2항제1호), 윤상현의원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24조제3항제1호) 등 같은 구성요건에 대하여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문신사의 등록 없이 문신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대여 등의 행위를 알선한 자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의 등록 없이 문신업소를 개설한 자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등을 한 자 2. 제7조제4항에 따른 문신사등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문신행위등을 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사등의 면허 없이 문신행위등을 한 자 4.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자 5.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문신사등의 면허 없이 문신업소등을 개설한 자 6. 제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문신업소등을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6.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한 자 7. 제17조를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자 8.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문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한 자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문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설한 자 7.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신고를 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등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신사등의 면허 없이 문신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의 정지기간 중에 문신행위등을 한 자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위생 및 안전 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열람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업소등의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신행위 등에 사용한 재료에 대한 정보와 부작용의 위험, 사후관리와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 및 신고증명서를 업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신업소등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정안은 문신사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이·미용업에 대한 벌칙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공중위생관리법 및 양 제정안 벌칙 비교 >

구 분	공중위생관리법 (이·미용업 ²⁷⁾)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무신고 영업자 • 영업정지·폐쇄명령 중 영업자	• 문신사 등록 없이 문신행위를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신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 등록증 대여 등의 행위를 알선한 자 • 문신사의 등록 없이 문신업소를 개설한 자 •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한 자 •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한 자 • 문신업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등을 한 자 • 문신사등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문신행위등을 한 자 • 문신사등의 면허 없이 문신행위등을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자 • 문신사등의 면허 없이 문신업소등을 개설한 자 • 신고를 하지 않고 문신업소등을 개설한 자 • 영업정지 등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한 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	• 변경사항 미신고자 • 자위승계 미신고자 •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한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문신사가 아니면서 문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문신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한 자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등을 한 자

구 분	공중위생관리법 (이·미용업27))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3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미용업을 한 사람 •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문신사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문신행위를 한 자	• 문신사등의 면허 없이 문신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면허자격의 정지기간 중 문신행위등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문신업소 개설자의 위생 및 안전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증명서를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방해한 자	•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문신업소등의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문신행위등에 사용한 재료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 면허증 및 신고증명서를 업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방해한 자
300만원이하 과태료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방해한 자 •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문신업소등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구 분	공중위생관리법 (이·미용업27))	박주민의원안	윤상현의원안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영업소 외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행한 자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아울러, 유사명칭 사용 시 처벌에 대한 입법례에는 「약사법」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 관련 처벌규정 비교>

법령	명칭 관련 규정		처벌사항	
「약사법」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제3항,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제3항	약사·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자는 약사·한약사라는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제94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27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제90조(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9 조 (무 면 허 자 의 업무금지 등)제2항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 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31조(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영양 관리법」	제 19 조 (명 칭 사용 의 금지)	영양사라는 명칭 사용자	제28조(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응급의료 에 관한 법 률」	제 59 조 (유 사 명 칭 사용 금지)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명 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 사용 불가	제62조 (과태료)	과태료(300 만원 이하)
「공중위생 관리법」	제 19 조 의 3 (같은 명 칭 의 사용 금지)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22조 (과태료)	과태료(100 만원 이하)

카. 기존 영업자 인정 문제

- 문신행위 등에 관한 별도의 법 체계가 마련되는 경우 기존에 문신행위 등의 영업을 해 온 기존 업자들에 대해서 부칙의 경과조치를 통해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
- 2건의 제정안 모두 부칙에서 관련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는데, 일정 유예기간 동안은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그 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 등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00